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인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15

발의연월일: 2020. 8. 13.

발 의 자:최인호·박상혁·박재호

강선우 • 전재수 • 김병욱

송옥주 · 이학영 · 조응천

이탄희 • 민홍철 • 서삼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 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교육훈련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,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·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를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, 사업자의 산업재해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7조, 제27조의9 및 제28조의2제1항제4호 신설).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(지도·감독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사업장에 출입하여 항만 내 안전관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안 전관리 상태를 확인·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
- 2. 항만운송사업자,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 류를 제출하거나 항만 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것
- ②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둔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감독관의 자격·임면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9(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·운영) ① 항만운송사업자 단체, 항만

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(이하 이 조에서 "항만안전협의체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있다.

②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산업재해보고서(산업재해조사표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7조(지도·감독) ① 해양수산부
	장관은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
	하고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
	송관련사업자의 안전관리의 적정
	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
	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
	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
	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	1. 사업장에 출입하여 항만 내
	안전관리 관계 서류를 검사하
	<u>거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·조</u>
	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
	2. 항만운송사업자, 항만운송관련
	사업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
	서류를 제출하거나 항만 내 안
	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
	<u>게 하는 것</u>
	②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업무
	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
	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둔다.
	③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감독관
	의 자격·임면 및 직무범위에 관
	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
<신 설>

제28조의2(보고·검사)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 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 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장·사 무실, 부선·예선 등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 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

로 정한다.

제27조의9(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· 운영) ① 항만운송사업자 단체,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안전 사고의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 안전에 관 한 협의체(이하 이 조에서 "항만 안전협의체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Ⅱ28조의2(보고·검사)	①

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산업재해보고서(산업재해조사
	<u> 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